

서의 意義가 全體와의 關聯에서 明白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忘却되어서 아니되는 것은 法文의 表現 그 自體나 法文의 表現을 無視하지 아니하고 그 合理的 意義를 發見하는 精神的 活動이 곧 解釋이다.

閱 雲 植

〈筆者——辯護士〉

〔四〕 콜푸 海峽 事件 (國際判例)

【事實】 콜푸 海峽 事件 (The Corfu Channel Case)의 當事國은 英國과 알바니아國이다. 事件은 一九四六年 五月十五日 英國 所屬의 두 巡洋艦이 北部 콜푸 海峽을 通航하던 中 Saranda附近의 알바니아國 沿岸砲臺로부터 砲擊을 當한데서 發端한다. 一九四六年 五月二十九日付 英國 海軍司令官의 報告에 依하면 同砲擊은 上記 두 艦船이 알바니아國 沿岸砲臺를 通過하여 方向을 옮기고 있을 무렵에 始作되어 十二分間 繼續되었는데 그間約 十二乃至 二〇發의 砲彈이 發射되었으나 命 中은 없었으며 砲擊은 두 艦船이 射程距離를 벗어났을 때에 비로소 停止되었다. 五月二十一日付 알바니아國의 覺書는 「國際法上 確立된 一般의 秩序에 따라서」(in accordance with a General Order founded on international law) 同 英國 艦 船을 向하여 數發을 發砲하도록 命令한 것이라고 하였다. 英國 政府는 即刻 알바니아國 政府에 對하여 嚴重한 抗議를 提出하고 아울러 이미 作定되어 있었던 兩國 政府間의 正常의 外交關係의 設定에 合意하는 通牒의 交付를 保留하게 되었다. 同 抗議에 있어서의 英國의 主張은, 國際法上 軍艦은 海峽, 特別히 公海間을 連結하며 또한 慣行上 國際航行에 使用되고 있는 콜푸 水路와 같은 海峽에 있어서의 이른바 無害通航權(the right of innocent passage)을 享有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英國 政府의 抗議에 對해서 알바니아 政府는 同事件이 發生한데 對하여 遺憾의 뜻을 表明하면서 萬若 그 두 艦船이 英國 所屬의 것이었음을 認知할 수 있었다라면 砲擊을 加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同 艦船은 所屬國旗를 揭揚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外國의 軍艦 및 商船은 알바니아 政府 當局에의 事前 通告와 同當局의 許可없이 는 알바니아國 領水를 通航하는 權利를 갖지 않는다고 宣言하였다. 알바니아國 政府의 이러한 宣言은 其後 同國 參謀總長의 通告로써 實施되게 되었는데 이 措置는 알바니아國 領水에 있어서의 外國 軍艦 및 商船의 通航에 關하여 同國 政府

에의 事前通告 및 이에 對한 同國政府의 許可를 받도록 하려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알바니아國의 一聯의 態度에 對해서 英國은——前記 두 英國艦船이 所屬國旗를 揭揚하고 있지 않았다는 알바니아國의 主張을 否認하고——外交의 抗議를 繼續했다. 一九四六年八月二十日付 同國 覺書에 있어서 英國政府는 公海間을 連絡하는 國際水路인 海峽에 있어서의 無害通航權에 關한 自國의 立場을 固執 主張하고 아울러 將來에 있어서 萬若에 瀾孚海峽을 通航하는 英國所屬의 艦船에 對해서 알바니아國의 沿岸砲가 또 다시 砲擊을 加할 경우에는 自衛를 爲하여 應射할 것임을 警告하였다. 이리하여 同 砲擊事件은 一但 落着되었다. 英國政府는 다시 알바니아國과의 外交關係의 設定을 考慮하면서 先 無害通航權의 尊重에 關한 알바니아國政府의 意向을 打診해 보기로 한 것이다.

如斯한 事情下에서 同年 九月二十二日 英國政府는 地中海艦隊所屬의 두隻의 巡洋艦(Lender號와 Mauritius號)과 두隻의 驅逐艦(Saunars號와 Volag號)은 北部 瀾孚海峽으로 派送하였다. 海峽의 通航中 砲擊은 없었으나 海峽의 알바니아國 領海內에 있어서 上記 艦隊中 Saunars와 Volag는 擊留水雷에 觸發 破損되어 莫其한 被害를 입었으며 그로 因하여 多數의 乘員이 死傷하였다. 이와 같은 不祥事에 衝激된 英國政府는 알바니아國政府에 對하여 近間 英國海軍이 同海峽의 掃海作業을 行할 것이라고 通告하였다. 이에 對하여 알바니아國政府는 英國政府 및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英國의 提議한 알바니아國 領水內에 있어서의 英國海軍에 依한 水雷除去作業은 알바니아國의 主權을 侵害하는 行爲라고 抗議하고 同時에 自由海峽으로서 看做될 海面을 劃定하기 爲한 混合委員會의 設置를 提議하였다.

이 같은 알바니아國의 抗議를 不拘하고 強力히 編成된 英國 艦隊는 瀾孚海峽의 알바니아國 領水內에 進入하여 同年十一月十二、十三兩日에 걸쳐서 二十二個의 擊留水雷를 除去하고 二個의 水雷는 調査用으로 Malia로 運搬되었으며 其他의 數個는 砲擊으로 破되였다. 英國海軍에 依한 水雷除去作業(Operation Retali)이 進行되는 동안 何等의 妨害도 없었다. 그러나 알바니아國政府는 即刻으로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電報를 發送하여 英國艦隊에 依한 同作業은 알바니아國의 主權을 侵害한 것으로서 抗議하고 同時에 總會의 注意를 喚起하도록 要請하였다.

反面에 있어서 英國政府는 上記 水雷等의 數多、擊留位置、性質、그리고 條件等에 關한 諸證據에 依據하여 同 擊留水雷等은 알바니아國에 依해서、또는 그 認識下에 最近에 敷設되었음이 틀림 없다고 主張하고 따라서 알바니아國政府는 그 水雷敷設의 存在함을 告知하지 않음으로써 國際法에 違反하였다고 非難하였다. 同時에 英國政府는 알바니아國政府에 對해서 그 國際法違反에 對한 責任으로서 陳謝 및 損害賠償과 아울러 死亡者의 遺家族에 對한 慰藉料을 要求하였다. 그리 고 同 覺書는 繼續하여 「萬若 此覺書를 傳達한 지 十四日以內에 滿足스러운 回答을 接受치 못하면 英國政府는 이 事件

이 國際平和와 安全에 對한 重大한 威脅과 破壞인을 認定하고 本件을 安全保障理事會에 付託할 수 밖에 다른 道理가 없으며, 또한 本事件은 國籍如何를 莫論하고 國際公路를 適法하게 使用한 無辜한 船員의 安全을 無視한 犯罪行爲임을 證示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對하여 十二月二十一日付 알바니아 政府의 覺書는 前記 水雷爆發事件에 關한 責任을 否認하고 自國은 水雷를 敷設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 存在함도 認識치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알바니아 政府가 英國 政府의 要求를 拒否한 까닭에 英國 政府는 翌年 一九四七年 一月 十日에 同紛爭을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에 付託하였다. 理事會는 同月 二十日에 同紛爭을 그 議題에 上程키로 決定하고 事件에 關한 討論、調査를 거듭한 結果 紛爭當事國에게 紛爭을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하도록 勸告하였다. 英國 政府는 理事會의 勸告에 따라서 一九四七年 五月 二十二日 國際司法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하였다. 英國의 提訴에 對하여 알바니아 政府는 英國 政府가 事件을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하기 前에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따라 紛爭付託의 條件에 關해서 알바니아 政府와의 合意가 없어 一方의 請求에 依하여 提訴한 것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國際司法裁判所規程 및 國際法上 承認된 原則에 違反된다는 것을 理由로 하여 本件에 對한 裁判所의 管轄權의 受諾이 將來에 있어서의 先例를 構成하는 것이 아님을 陳述하고 同時에 先決的抗辯(豫備異議—Preliminary Objection)을 提出하였다.

裁判所는 優先 알바니아 國의 先決的抗辯에 關해서 審理하고 一九四八年 三月 二十五日 十五對一으로써 同抗辯을 却下하였다.

이리하여 兩當事國은 三月 二十五日의 特別合意에 依해서 다음의 두가지 點의 本案 訴訟을 付託하였다. (一) 科孚海峽의 알바니아 領水內에 있어서의 前記 水雷爆發과 그로 因한 損害와 人命의 損失에 對한 國際法上의 責任은 알바니아 國에 있는가. 또한 損害賠償의 支拂義務가 있는가. (二) 英國은 同領水에 있어서 一九四六年 十月 二十二日과 十一月 十二、十三日의 同國 艦隊가 取한 行動에 依하여 國際法上 알바니아 國의 主權을 侵害하였는가, 또한 補償(Satisfaction)을 支拂할 義務가 있는가.

裁判所는 上記 두 爭點에 對하여 各各 肯定的 判決을 내렸다. 但 十月 二十二日의 英國 海軍의 行爲(알부海峽에의 艦隊派送)는 알바니아 國의 主權을 侵害한 것이 아니라고 判決하였다.

(判旨) 알바니아 政府의 先決的抗辯에 對하여, 裁判所는, 先決的抗辯을 提出하면서 同時에 英國 政府의 訴訟節次의 違法(一方의 提訴)에도 不拘하고 法廷에 出頭할 用意가 있음을 陳述한 一九四七年 七月 二日付 알바니아 政府의 書翰은, 本件에 對한 裁判所 管轄權의 自發的이며 또한 다른 餘地없는 受諾을 構成하는 것으로 認定하고(Corfu Channel,

I. C. J. Reports 1947—1948, p. 27.)' 또한 管轄權의 受諾形式은 紛爭當事國의 合意가 裁判所의 管轄權을 有與한다고 하더라도 裁判所의 規程이나 規則도 合意가 어떤 特別한 形式으로써 表明될 것을 要하지 않는다(認定하였다)(Ibid., p. 28.)。裁判所는 또한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는 當事國에게 事件을 裁判所에 付託할 것을 要求하고 있으나 付託行爲(提訴)가 共同으로 行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趣旨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付託方法은 그 勸告에 表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裁判所의 作用을 規制하는 法條에 依하여 規律되는 範圍에 그 法條等이 禁하지 않는 節次를 違法으로 認定할 수는 없다고論하였다(Ibid., p. 28.)。이리하여 裁判所는 十五對一(알바니아國의 任命한 ad hoc 判事만이 反對)로써 알바니아政府의 一九四七年 七月 二日付 書翰의 裁判管轄權에 對한 留保는 訴訟節次의 違法性에 基한 先決的 抗辯을 提出할 수 없으며 또한 本案訴訟의 管轄權을 爭訴할 수 없다고 判決하였다。裁判所는 나아가서,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가 事件에 對한 裁判所의 強制管轄權을 設定한 것이라고 主張한 英國側의 意見에 關해서 그것은 訴訟의 目的이 되지 않는다 고하여 留保하였다。

二 本案訴訟의 쟁점의 點、即 알바니아國의 國際責任에 關하여、裁判所는 다음과 같이 判定하였다。알바니아國 領水內에 敷設된 繫留水雷가 爆發하고 그로 因하여 英國 軍艦이 破損되었다는 事實만으로써 알바니아政府에 同水雷敷設의 認識(責任)을 課할 수는 없으나 國家의 領土나 領水에 있어서 國際法에 違反된 行爲가 發生한 경우에는 國際慣行上 그 國家는 그에 對한 釋明을 要하는 것이다(Corfu Channel(Meris), I. C. J. Reports 1949, p. 18~19.)。이 點에 있어서 알바니아政府가 哥倫布海峽의 充分히 監視할 수 있는 海域에 있어서 水雷의 存在함을 認識치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同水雷等이 알바니아政府의 認識없이 敷設되었다고 認定할 수는 없다。이 認識으로부터 導出되는 알바니아政府의 義務는 國際航行一般의 利益을 爲하여 自國의 領水內에 繫留水雷가 存在함을 告知하고 또한 急迫한 危險에 接近해 오는 英國軍艦에 對하여 警告를 行하는데 있다。이러한 義務는 明白히 一般的、普遍的으로 承認된 諸原則、即 戰時보다도平時에 있어서 한층 더 要求되는 人道的 基本的 考慮、海洋通航自由의 原則、및 他國의 權利에 反하는 行爲를 위하여 그 領域의 使用의 意識的으로 許容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모든 國家의 義務(every State's obligation not to allow knowingly its territory to be used for acts contrary to the rights of other States)에 依據하는 것이다(Ibid., p. 22.)。알바니아政府는 慘事を 防止하는 如何한 措置도 取하지 아니하였다。이들 重大한 怠慢(Grave omissions)은 알바니아國의 國際責任을 生하게 한다。裁判所는 十一對五로써 알바니아의 國際責任을 認定하고 損害賠償支拂의 義務를 決定하였다。

本案에 關한 알바니아國의 損害賠償額의 決定의 訴訟에 對하여 알바니아政府는 다시 管轄權의 抗辯을 提起하였으나

裁判所는 同抗辯을 却下하고 十二對二로써 알바니아國의 英國에 對한 賠償金額을 八四三、九四七磅으로 決定하였다.

三 알바니아國의 請求에 依한 本案 第二의 係爭點에 關하여 裁判所는 다음과 같이 判定하였다. 諸國은 平時에 있어서 軍艦을 沿岸國의 事前許可를 받음이 없이, 通航이 無害(innocent)함을 條件으로 하여, 公海間의 國際航行에 利用되는 海峽을 通航케 할 수 있는 權利를 享有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承認되고 또한 國際慣習과 一致한다는 意見を 裁判所는 가지는 바이다. 따라서 條約으로써 別段의 約定이 없으면 沿岸國은 平時에 있어서 如斯한 海峽의 通航을 禁止하는 權利를 갖지 아니한다 (Ibid., p. 28.). 北部 콜푸海峽은 알바니아國과 希臘國의 國境을 構成하며 그 一部는 全體로서 兩國의 領海內에 있다. 同海峽은 希臘國에 있어서 콜푸港에 이르는 海上交通의 要路로 되어 있다. 이러한 諸條件을 考慮한 結果 裁判所는 콜푸海峽이 平時에 있어서 沿岸國에 依하여 그 通航을 禁止할 수 없는 國際公路(international highways, voies maritimes internationales)의 範疇에 屬하는 것으로 看做되어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되었다 (Ibid., pp. 28~29.). 裁判所는 알바니아國이 海峽通航에 關한 規則을 設定할 수 있다는 것을 認定하였으나 禁止 또는 特別許可에 服從케 할 權能은 없다고 判定하였다. 十月二十二日의 英國軍艦의 通航이 無害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 알바니아國의 主張은 裁判所에 依하여 認定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裁判所는 十四對二로써 十月二十二日의 英國海軍의 行動(海峽通過)은 알바니아國의 主權을 侵害한 것이 아니라고 決定하였다 (Ibid., p. 31.).

十一月十二、十三日의 英國軍艦의 行動(掃海作業)은 英國代理人에 依하여 自己保護 또는 自救를 爲한 行動으로서 主張되었다. 그러나 裁判所는 이를 否認하고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獨立國家間에 있어서 領海主權의 尊重은 國際關係의 本質의 基礎(essential foundation)이다. 水雷爆發後 알바니아政府가 그 義務를 履行치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同政府의 通告의 遲滯等이 英國政府의 前記 措置를 爲하여 參酌할만한 諸事情이 있었다고 認定한다. 그러나 國際法の 尊重을 確保하기 위하여 存在하고 있는 機關으로서, 裁判所는 英國海軍의 行動이 알바니아國의 主權의 侵犯을 構成하는 것으로 宣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Ibid., p. 35.). 이러한 裁判所는 全員一致로써 主權의 侵害과 그에 對한 適當한 補償(Satisfaction)의 宣言 그 自體에 依하여 表示된 것으로 判決하였다 (Corfu Channel, I. C. J. Reports 1949, p. 26.).

〔評釋〕 一、先決的抗辯(國際司法裁判所規則 第六二條)은 訴訟의 本案 審理를 排除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豫備異議

이다. 알바니아政府에 依하여 提起된 첫째의 先決的抗辯, 即 裁判所管轄權의 異議에 對한 裁判所의 判決은 正當하다고 생각된다. 判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알바니아政府는 先決的抗辯을 援用하는 一九

四七年 七月 二日付 書翰에 있어서 英國政府의 訴訟節次의 違法——即當事者인 알바니아政府와의 特別合意에 依하지 않고 一方的請求에 依하여 訴訟을 提起하였다는 것——에도 不拘하고 裁判所에 出頭할 用意가 있음을 通告하였는 바 이 書翰은 本件의 管轄權에 對한 豫備異議의 提訴權을 實質的으로 剝奪한 것으로 理解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同書翰에 있어서 알바니아政府는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를 全的으로 受諾한다」고 宣言하고 또한 明示的으로 「本件에 對한 裁判所의 管轄權」을 受諾하였던 것이다 (I. C. J. Reports 1) 따라서 裁判所가 判示한 바와 같이 同書翰의 通告는 裁判所 管轄權의 自發的이며 爭議할 수 없는 受諾을 構成한 것으로 解釋된다. 이와 關聯하여 裁判所가, 管轄權의 受諾形式은 當事國의 合意에 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裁判所規程이나 規則도 그 合意가 어떤 特定한 形式으로 表明될 것을 要치 않는다고 判示한 것은 管轄權의 受諾의 合意形成에 關한 有權의 解釋으로서 裁判所의 管轄權은 當事國의 公式的인 同意 뿐만 아니라 非公式的인 同意에 依해서도 付與될 수 있다는 것을 示唆한 것이다.

事件의 裁判所에의 付託을 勸告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가 裁判所의 強制管轄權을 構成하는 것으로 解釋한 英國의 主張은, 本件의 경우 알바니아國의 同決議의 受諾을 前提로 하는限, 正當하다. 一般論으로서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決議가 法的拘束力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憲章의 解釋上 異論이 없는 바이다. 그리고 憲章 第三六條 三項이 強制管轄權을 默示的으로 導入한 것이라는 解釋에는 無理가 있다 (李漢基, 國際法參照).

本件에 있어서 알바니아政府가 裁判所의 管轄權에 對한 先決的抗辯을 提起한 것은 英國의 一方的提訴에 對하여 被告로서 應訴하는 것 보다는 當事國間의 特別合意에 依하여 事件을 付託하고 또한 그렇게 하므로써 自國의 利益을 保護하는데 보다 有利한 立場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二、本案訴訟의 第一의 係爭點、即 알바니아國의 國際責任과 損害賠償支拂의 義務에 關한 判決에 있어 裁判所는 「알바니아國의 領水內에 敷設된 水雷가 爆發하여 英國軍艦이 犧牲되었다는 그 事實만으로는 알바니아政府가 同水雷敷設을 認識하고 있었던 것으로 看做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하다. …… 其他의 諸事情을 떠나서 이 事實 自體만으로는 곧 責任을 成立시키지도 않으며 또한 舉證責任을 轉嫁시키지도 않는다」라고 判示하였는데, 이것은 國家의 國際責任이 成立하려면 國際法違反의 行爲(作爲 또는 不作爲)라는 客觀的 事實(要件) 以外에、國家責任의 周邊의 歸屬(periphere Zurechnung)의 條件으로서 國家機關의 故意 또는 過失이 있어야 한다는 通說의 見解 또는 原則(過失責任의)을 確認한 것으로서 하나의 有益한 判例를 提供한 것이다 (Oppenheim-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vol. I, 8th ed., p. 343-8134參照).

判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裁判所는 水雷敷設에 對한 알바니아政府의 認識을 認定하고, 그 認識으로 부터 結果되는 同政府의 (通告)義務의 根據를, 「戰時에 있어서 適用될 一九〇七年의 海牙條約 第八號 (自動觸發海底水雷의) 敷設에 關한 條約」에서 가 아니라, 確實히 一般的 且 널리 承認된 諸原則、即 戰時에 있어서 보다도平時에 있어서 한層 더 要求되는 人道性의 基本的考慮、海洋交通自由의 原則、그리고 他國의 權利에 反하는 行爲를 爲하여 그 領域이 意識적으로 使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모든 國家의 義務」에서 直接 導出하였는데 이는 實定法의 援用없이 明白히 「法의 一般原則」을 適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Oppenheim, op. cit., 法四二八九, 二八) (面 및 五八面參照)。이 判決의 基礎가 된 原則은 國際聯合 國際法委員會에 依하여 確認되고 또한 成文化되었다 (第十六條參照) 裁判所는 알바니아政府의 그 義務의 違反(重大한 怠慢)으로 因한 國際責任을 認定하고 그 責任의 周邊의 歸屬의 條件으로서 同政府의 認識을 認定하였는데 그 認識이 故意인지 過失인지는 明確치 않다。故意와 過失의 區別은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이 未分化의 狀態에 있는 現國際法體制下에서는

특히 實益이 없는 것 같으나 損害賠償의 算定에는 重要な 參考로 될 수 있는 것이다.

三、本案訴訟의 第二의 主題에 關하여 裁判所는 海峽에 있어서의 軍艦의 無害通航權、콜푸海峽의 性質、自存權、領域主權의 尊重等の 諸問題를 檢討하고 現行法の 解釋에 有益한 資料를 提供하였다.

海峽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無害通航의 權利가 認定된다. 海峽中에는 國際交通의 要路를 構成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것은 重要な 것이다. 海牙國際法典會議는 國際交通의 要路에 該當하는 海峽에 關하여 商船은 勿論、軍艦의 通航도 이를 妨害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本件에 있어서 裁判所는 「平時에 있어서 各國家는 軍艦을 沿岸國의 事前許可를 받음이 없이 그 通航이 無害임을 條件으로 하여 公海間의 國際航行에 利用되는 海峽을 通航케 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承認되고 있으며 또한 國際慣習과도 一致한다」는 意見을 表明하였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海峽에 있어서의 軍艦의 無害通航權이 一般國際慣習法으로 確立되어 있음을 確認한 것이다. 그런데 海峽을 構成하지 않는 「領海」에 있어서의 軍艦의 通航權에 關해서는 何等の 意見도 提示되지 않았다.

콜푸海峽의 性質에 關하여 裁判所는 알바니아政府의 主張을 否認하고 北部 콜푸海峽의 地理的 및 慣行上의 諸事情을 考慮하여 그것이 「平時에 있어서 沿岸國에 依하여 그 航行을 禁止할 수 없는 國際公路」임을 確認하였다. 十月二十二日의 英國艦隊의 通航이 「無害」한 것이 아니었다는 알바니아政府의 主張에 對하여 裁判所가, 알바니아國의 前般의 行爲(五月十五日의 砲擊)에 鑑하여 軍艦이 自己防衛의 措置를 準備하였다는理由로 그 無害함을 否認할 수는 없다고 判定한 것은 至當하다.

十一月十二、十三兩日의 英國海軍의 行爲(掃海作業)에 對하여 英國政府는 그것이 航行의 安全과 將來의 訴訟에 所用될 證據의 保存을 爲하여 必要한 措置였다고 主張하고 또한 그것은 自己保護 또는 自救를

爲한 行爲였다고 辯論하였다. 그러나 裁判所는 이를 容認치 않고 前記 判旨와 같이 英國海軍의 行動은 알바니아國의 領域主權의 侵害를 構成한 것으로 宣言하였다. 이 判決은 國家에 依한 武力의 正當한 使用에 現行法規가 付與한 限界를 보여 준 것이며, 따라서 武力行使는 個別的 또는 集團의 自衛 或은 平和의 維持 또는 回復을 爲하여 國際聯合憲章下에서 취해지는 集團의 措置의 執行의 경우에만 合法的이라는 것이 現行 法인 것 같다 (Berby, The Law of Nations, 5th ed., p. 326.)。 그런데 一般論으로서 國際法違反에 對한 抗議 또는 制裁로서 行하여 지는 干涉은 一般的으로 그 合法性이 認定된다. 他國의 國際法違反行爲로 因하여 直接으로 損害를 입은 國家가 그 加害國의 國際責任을 追及하기 爲하여 干涉을 行하는 것은 當然하며 一般國際法에 違反하는 行爲가 있을 경우에는 直接으로 損害를 입지 않은 國家도 그에 對하여 干涉하는 것은 適法한 것으로 認定된다. 英國海軍의 前記 行動을 「主權의 侵害」로서 斷定한 裁判所의 意見에는 國際法違反에 對한 干涉의 合法性이 거의 考慮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Openheim, op. cit., p. 311. 參照)。

一九四九年十二月十五日 裁判所는 알바니아國의 英國에 對한 前記 賠償金額을 決定하였으나 알바니아 政府는 아직 그 賠償을 支拂하지 않고 있으며 英國도 憲章 第九四條二項에 依據한 判決의 執行을 安全保障 理事會에 付託하지 않았다.

裹 載 混

〈筆者—本大學專任講師〉